

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중 개정령(대통령령 제18603호, 2004. 12. 18)이 공포·시행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우리구 직원 총 정원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II. 주요골자

- 가. 현 정원 변동 없이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구의회사무국 정원 24명에서 26명으로 2명 보강하고, 집행기관 정원 1,235명에서 2명을 감축하여 1,233명으로 조정 (안 제2조)
- 나. 「서울특별시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으로 규정된 구 본청·보건소·동 및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 규정을 신설 (안 제3조)
- 다.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(안 제4조)

III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 확대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(2004. 12. 18, 대통령령)된 바 있으며,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도입과 자치조직권 강화에 따른 자율관리시스템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은 위 법령개정에 따라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여유기구 도입 등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한데 이어,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에 관한 개정내용에 대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,

기타 총 정원 범위내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일부 재조정한 사항 등으로,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.

○ 조항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,

- 1) 안 제2조(정원의 총수)는 의회의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집행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인원 2명(2003년 1명, 2004년 1명)에 대해 현원에 맞게 정원을 재 조정한 사항이고,
- 2) 안 제3조제1항에서 종전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규정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정원의 변동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무분별한 조직팽창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율관리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이며(규칙 제21조제2항)
- 3) 안 제3조제2항에서 종전의 규정내용을 삭제한 것은 1998년 이후 추진해 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“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·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현원”에 대해 2003년 8월 31일까지 이를 해소하기로 하였던 것이나, 그 기한이 이미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2003년 3월 12일 개정조례 부칙에도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문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참고로 이번 회기부터 적용한 조례제명 띄어쓰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,

종전 법제처의 “법령입안 심사기준”과 국회의 “국회법률안입안기준”에 의거 법령의 제명을 붙여쓰도록 하여 왔으나, 어문규범상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등 불합리하다는 판단아래 법제처에서 “법령입안 심사기준”을 개정하여 법령 제명을 띄어쓰도록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

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심사하는 제·개정 법령부터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있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규·훈령 등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법령에 준하여 띄어쓰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구에 앞서 적극 띄어쓰기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.

IV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

第103條 (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)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, 그 定員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 (정원책정의 일반기준) 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,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
1. ~5. (생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2. 시·군·구의 경우 : 본청, 의회사무국·사무과, 합의제행정기관, 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, 자치구가 아닌 구, 읍·면·동 및 그 출장소

제14조 (표준정원의 책정) ①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"표준정원"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2 (인력운용계획의 수립·시행) ④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·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04.12.18>

제15조 (정원의 관리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0조 (직급별 정원) ①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
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2항 각호의 정원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의 공무원정원을 다른 직렬의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12.18>

제21조 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4.12.18>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신설 2004.12.18>

제24조 (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한 및 의결<개정 2004.12.18>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. <신설 2004.12.18>

제25조 (기구 및 정원규칙의 제출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04.12.18]

제26조 (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·규칙의 입법예고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. [본조신설 2004.12.18]

○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

부 칙(2003. 3. 12, 조례 제537호)

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0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(개정 2003.03.12)